

식품중 잔류동물용의약품!

그것이 궁금하다.

〈식품의약안전청 자료 발췌〉

Q: 동물용의약품은 무엇인가요?

A: 사람이 질병 등으로 아플 때는 약으로 치료합니다. 동물도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약으로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약품과 구별하여 동물의 질병치료 및 예방에 사용하는 약품을 동물용의약품(Veterinary Drug)이라고 합니다.

농림부령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서는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하며, 양봉용·양잠용, 수산용 및 애완용(관상어 포함)의약품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Q: 잔류물질이 무엇인가요?

A: 잔류물질(Residues)이라 함은 농·축·수산물 등의 질병치료, 예방 또는 진단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과 같이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식품중에 잔류하는 소량의 물질을 말합니다.

잔류물질에는 사용한 원물질과 동식물체내에서 분해 또는 대사되어 잔류하는 물질도 포함됩니다. 오염물질은 환경에서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것이라면 잔류물질은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약품이기 때문에 관리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은 위해평가를 거쳐 사용을 허가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반면, 다이옥신이나 PCB 같은 오염물질은 독성평가를 하여 식품에 기준을 설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Q: 잔류허용기준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국가가 유통되는 식품에 대하여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하였다면 그 식품은 식품으로서 부적합제품이 됩니다.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1차위반 품목류 제조정지 1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폐기, 2차 위반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폐기, 3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3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폐기 행정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Q: 우리나라의 잔류허용기준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A: 우리나라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의 ‘정보마당/KFDA분야별정보/식품’에 식품공전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벅'의 사전적 의미

- 곡식가루에 호박같은 것을 섞어서 된 풀처럼 쑨 음식
- 한데 뒤섞여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된 사물'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액체 따위가 몸에 잔뜩 묻은 상태'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예시

- '06년 9.26 A일보 보도 제목 일부벌꿀 '항생제 범벅' (X) 잘못된 표현임

ppm이란?

- 100만분의 1을 의미하는 단어로 mg/kg 또는 ppm이라고 함
- 1km 중 1mm, 12일간의 시간 중 1초, 100만원 중의 1원, 일반 가정욕조 물중의 1ml에 해당

ppb란?

- 10억분의 1을 의미하는 단어로 μg 또는 ppb라고 함
- 10억 중국인구 중 한명
- 서울(-) 부산 왕복거리 중의 1mm, 32년 중 1초, 10억원 중 1원에 해당

Q: 잔류허용기준 설정 양은 어느 정도 인가요?

A: 언론보도 등에서 식품에 항생제나 농약 등이 검출된다면 자주 ‘범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에서 허용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양은 가장 작은 양이 0.3ppb에서 가장 많은 양이 10ppm 수준이고 대부분이 0.1~0.5ppm 수준입니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위반하는 사례를 살펴보아도 10ppm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이러한 물질의 잔류를 ‘범벅’으로 표현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위에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Q: 기준 없는 항생제 및 합성 항균제의 일류기준 0.03mg/kg 설정 이유는?

A: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은 원칙적으로 기준이 ‘불검출’입니다.

하지만 ‘불검출’ 기준에 대한 관리는 분석방법, 장비, 실험자 숙련도 등의 요인에 따라 ‘불검출의 한계(정량한계 또는 검출한계)가 모두 다를 수 있어 적부의

판정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방법의 일률 정량한계 개념으로 0.03mg/kg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기준은 허용의 개념이 아니고 ‘불검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기준으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항생제 및 합성항균제로 대상약품을 제한한 이유는 호르몬제 살충제, 살균제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대상약품이 너무 많아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고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봉**

<더 자세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470000-0001706-14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무엇이 궁금하세요?

KFDA 식품의약품안전처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